

운 영 규 정 개 요

I. 기본정보 및 일반현황

기관명	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	장기요양기관번호	3-4782000-103
대표자	서정순	시설장	서정순
설치일자	2019.01.15	제공급여 종류	주간보호
연 락 처	054/373-2012	이메일	10180055@hanmail.net
팩스번호	054/373-2013	블로그/밴드	https://m.blog.naver.com/olive0717 https://band.us/band/81061905
소 재 지	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163 5층		
주차시설	시티빌딩 1층	교통편	터미널에서 화양방면 구름다리위
사업지역	청도군		
영업일 (영업시간)	(평일) 09:00~18:00 (주말 및 공휴일) 필요시		

II. 직원 근무체계

총 원	시 설 장	사회복지사	요양보호사	간호조무사	조리원	운전원
10	1	3	3	1	1	1

III. 이용대상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
모집방법 및 홍보	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로 기타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○ 이용상담 전화 또는 내방상담 ○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○ 유관기관 연계, 홍보 전단지 ○ 기존 이용계약자의 지인 소개, 근로자의 소개 등

IV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기간	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 내
계약목적	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.
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	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고,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(이) 전액 부담함.
신원인수인의 권리	이용자의 주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는 권리,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,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,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,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의 의무	계약에 따른 “이용자의 주보호자”의 일체 채무의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,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, 계약정보가 변경된 경우 통보 의무, 보호자 의무 이행이 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, 월 이용료 납부의무
계약의 해제	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, 이용자의 장기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배상책임보험	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함.

V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집 참조	본 센터 내 비치된 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.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